16.개인신용평가대응권 (개인회원에 관련된 설명)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 · 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 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 · 삭제 ㅇ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재산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ㅇ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6조의 2)를 말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 자동화평가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ㅇ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ㅇ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에 따라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금리인하 요구권의 대상임을 확인하셨습니가? □ 대상 □ 비대상 ㅇ 채무자인 고객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예 : 인터넷뱅킹, 앱,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횟수제한 없음) ㅇ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를 보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금융거래가 제약되며 신용점수 등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해 드리나,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며, 은행은 회원의 월 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셨

습니까?(개인회원에 관련된 설명)

② 아니오

① 예